

부속서I  
콜롬비아의 유보목록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71년 <i>Código de Comercio, Arts. 469, 471 및 474</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타국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되고 주된 주소가 타국에 있는 법인은 콜롬비아가 제공한 영업허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내에 지점을 개설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내국민 대우(제9.2조)
조 치	<i>1993년 Código Sustantivo del Trabajo, Arts. 74 및 75</i>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10인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일반 노동인력의 일부로서 콜롬비아인을 일반직 근로자의 90 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그리고 숙련직, 특수직 또는 관리직 인력 또는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80 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고용한다.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비율은 필수적이며 극히 전문적인 근로자가 관련된 경우로서 콜롬비아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낮출 수 있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조 치	<i>2000년 Decreto 2080, Art. 26</i>
유보내용	<p><u>투자</u></p> <p>외국 투자자는 콜롬비아에서 오직 관리자(<i>Administrador</i>)를 통해서만 증권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p>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치	1995년 Ley 226, Arts. 3 및 11을 포함하여, <b>유보내용</b> 에 명시된 대로
유보내용	<p><u>투자</u></p> <p>콜롬비아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의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권 및 그러한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자가 그 결과인 기업을 통제하는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콜롬비아는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p>이 비합치조치에 관한 기존의 관련 법령은 1995년 Ley 226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가 자신의 기업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롬비아 공기업이나 그 밖의 콜롬비아 정부기관이 아닌 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지분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1995년 Ley 226 제11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음에게 먼저 제공한다.</p> <p>가. 그 기업 및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그 밖의 기업의 현직, 퇴직 및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종전의 피고용인은 제외한) 종전의 피고용인</p> <p>나. 그 기업의 피고용인 및 종전 고용인 협회</p> <p>다. 피고용인 조합</p> <p>라. 노동 조합의 연합 및 연맹</p> <p>마. 피고용인 기금(“fondos de empleados”)</p> <p>바. 연금 및 퇴직 기금, 그리고</p>

## 사. 조합 단체<sup>1</sup>

그러나, 일단 그러한 지분이 이전되거나 매각되면, 콜롬비아는 그러한 지분의 어떠한 후속 이전 또는 기타 후속 처분도 통제할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 유보안에 기술된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로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유지되거나 채택되는 모든 조치는 기존의 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공기업”이란 콜롬비아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기업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8년 Ley 454는 특히 “저축 및 신용 조합(cooperativas de ahorro y crédito)”, “금융 조합(cooperativas financieras)” 및 “다기능 또는 종합 조합(cooperativas multiactivas o integrales)”을 포함하여, 콜롬비아에 존재하는 조합 단체의 유형을 규정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치	2004년 Ley 915, Art. 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된 사무소가 산 안드레스(San Andrés),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및 산타 까탈리나(Santa Catalina) 자유항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동 지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치는 제9.13조에 정의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분 야	회계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1990년 Ley 43, Art. 3 Par.1</i> <i>2004년 Resolución No. 160, Art. 2 Par. 및 Art. 6</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p><i>Junta Central de Contadores</i>에 등록된 인 만이 회계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 외국 국민은 등록 요청 이전에 최소한 3년간 지속적으로 콜롬비아에 주소를 두었어야 하며,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한 회계 경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력은 공공회계학 연구에 종사하는 도중 또는 그 이후에 획득될 수 있다.</p> <p>자연인의 경우, “주소를 두다” 라는 용어는 콜롬비아의 거주자이며 콜롬비아 내에 체류할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p>

분 야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조 치 2000년 Decreto 309, Art. 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 연구에 착수하려고 계획하는 외국인은 연구 또는 그러한 연구 결과 분석에 최소한 1인의 콜롬비아 연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치는 외국인과 콜롬비아 연구자가 과학 연구 또는 분석과 관련한 권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다.



분 야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 대우(제9.3조) 시장 접근(제9.4조)
조 치	<i>1991년 Decreto 2256, Arts. 27, 28 및 67</i> <i>2003년 Acuerdo 005 Sección II 및 VII</i>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국민만이 영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선박은 허가를 보유한 콜롬비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허가를 획득하고 콜롬비아의 영해에서 상업적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국적 선박의 허가 및 어업 면허를 위한 비용은 콜롬비아 국적 선박보다 더 높다.

외국 국적 선박의 기국이 콜롬비아가 체결한 다른 양자 협정의 당사국인 경우, 허가를 보유한 콜롬비아 기업과의 제휴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다른 양자 협정상의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분 야 광물 및 탄화수소의 탐사 및 채굴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2001년 Ley 685, Art. 19 및 20*  
*1953년 Decreto legislativo, 1056 Art. 10*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71 및 47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에서 광물 및 탄화수소의 탐사 및 채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콜롬비아 내에 지점,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개설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그러한 서비스에 1년 미만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4년 <i>Decreto 356, Arts. 8, 12, 23 및 25</i>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 협동조합 <sup>2</sup> 으로 설립된 기업만이 콜롬비아에서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의 파트너 또는 조합원은 콜롬비아 국민이어야 한다.  1994년 2월 11일 이전에 외국 조합원 또는 외국 자본을 포함하여 설립된 기업은 외국 조합원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없다. 그 날짜 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그 법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

<sup>2</sup> 1994년 *Decreto 356 제 23 조*는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 협동조합”을 보수를 목적으로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설되어, 조합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연합 기업으로 정의한다.

분 야	저널리즘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 치	1944년 <i>Ley 29, Art. 13</i>
유보내용	<p><u>투자</u></p> <p>콜롬비아 정치에 주안점을 두고 콜롬비아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대표이사 또는 총책임자는 콜롬비아 국민이어야 한다.</p>

분 야	여행 및 관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1990년 Ley 32, Art. 5</i> <i>1997년 Decreto 502, Art. 1부터 7까지</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국민이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여행 및 관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관광 가이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9.13조에 정의된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분 야	공증 및 등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시장 접근(제9.4조)
조 치	<i>1970년 Decreto Ley 960, Art. 123, 124, 126, 127 및 132</i> <i>1970년 Decreto Ley 1250, Art. 60</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국민만이 공증인 및/또는 등기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공증인 지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관심 지역의 인구, 서비스의 필요성 및 통신수단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분 야 주거 공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4년 Ley 142, Arts. 1, 17, 18, 19 및 23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71 및 472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거 공공 서비스 기업은 공공서비스 기업 (*Empresas de Servicios Públicos, E.S.P.*) 제도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기명 주식회사(*sociedad por acciones*)로 설립되어야 한다. 기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국가의 상업적 및 산업적 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분권화된 실체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주거 공공 서비스는 수도, 하수, 쓰레기 처리, 전력, 가연 가스 배급 및 기본 공중 회선 교환 전화 서비스(PSTN)와 그에 대한 보충적 활동을 포함한다. 기본 공중 회선 교환 전화 서비스에 대한 보충적 활동이란 장거리 공중 전화 및 벽지의 고정 무선 가입자회선 전화 서비스를 의미하나, 상업용 이동 전화 서비스는 의미하지 아니한다.

지역적으로 조직된 공동체가 지배지분을 갖는 기업은 그 공동체에 주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허가 또는 면허 부여에 있어 이 경우가 아니었다라면 입찰가가 동등했을 기업에 비해 우대된다.

분 야

전력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조 치

1994년 *Ley 143, Art. 7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994년 7월 12일 이전에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전력의 마케팅(*comercialización*) 및 송전에 종사하거나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활동에 동시에 종사할 수 있다: 발전, 배전, 또는 송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콜롬비아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마케팅과 송전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분 야	통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9년 Decreto 2685, Arts. 74 및 76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통관 중개, 우편 서비스 중개(“<i>intermediación para servicios postales</i>”) 및 특별 운송<sup>3</sup> (“<i>mensajería especializada</i>”) (특급배달 포함), 상품의 유치, 통관 통제 하에 있는 상품의 운송, 또는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상시 통관 이용자(“<i>Usuarios Aduaneros Permanentes</i>”) 또는 다량 수출 이용자(“<i>Usuarios Altamente Exportadores</i>”)로서 활동하려는 인은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거나,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며 그 활동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p>

---

<sup>3</sup> “특별 운송 서비스(*Servicio de mensajería especializada*)”란 공인된 국내 및 국제 우편망과는 별도로 공급되고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또는 콜롬비아의 영역으로부터 육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되는 우편물 및 기타 우편 대상물의 수취, 수집 그리고 개인 배달을 위해 특별 절차의 적용과 채택을 필요로 하는 우편 서비스의 종류를 말한다.

분 야 우편 및 특별 운송(*Mensajería Especializada*)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2009년 *Ley 1369, Art. 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콜롬비아에서 우편 서비스 및 “특별 운송(*mensajería especializada*)” (직 전 유보항목의 각주에 정의된 대로)을 공급할 수 있다.

분 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2001년 Ley 671</i> <i>2003년 Decreto 1616, Arts. 13 및 16</i> <i>1997년 Decreto 2542, Art. 2</i> <i>2005년 Decreto 2926, Art. 2</i> <i>2007년 Decreto 2870, Título II (Arts. 3부터 7까지)</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콜롬비아 내에서 통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콜롬비아는 기업에게, <i>1997년 Decreto 2542 제2조</i> , <i>2003년 Decreto 1616 제13조 및 제16조</i> , 그리고 <i>2005년 Decreto 2926</i> 에 따라 장거리 기본 교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허를 <i>Colombia Telecomunicaciones S.A. E.S.P.</i> 에 제공한 것 보다 지불 및 기간에 관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분 야	영화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내국민대우 (제9.2조)
조 치	<i>2003년 Ley 814, Arts. 5, 14, 15, 18 및 19</i>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영화의 상영 및 배급은 그러한 상영 및 배급으로부터 파생되는 월 순수익의 8.5 퍼센트로 정해진 영화 발전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다.  상영자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외국 영화가 콜롬비아 단편 영화와 함께 상영되는 경우에는 2.25 퍼센트로 감면된다.  배급자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그 배급자가 직전 해 동안 영화관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한 콜롬비아 장편 영화의 비율이 정부가 정한 목표 비율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2012년까지 5.5 퍼센트로 감면된다.

분 야	라디오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1993년 Ley 80, Art. 35</i> <i>1966년 Ley 74, Art. 7</i> <i>1995년 Decreto 1447, Arts. 7, 9 및 18</i>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는 콜롬비아 국민 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허가의 수는 법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정보성 프로그램 또는 언론 보도 프로그램의 감독은 콜롬비아 국민이어야 한다.

분 야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시청각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1991년 Ley 014, Art. 37</i> <i>2001년 Ley 680, Arts. 1 및 4</i> <i>1996년 Ley 335, Arts. 13 및 24</i> <i>1995년 Ley 182, Arts. 37 numeral 3, 47 및 48</i> <i>1995년 Acuerdo 002, Art. 10 Parágrafo</i> <i>1997년 Acuerdo 023, Art. 8 Parágrafo</i> <i>1997년 Acuerdo 024, Arts. 6 및 9</i> <i>1997년 Acuerdo 020, Arts. 3 및 4</i>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국민 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 전국 텔레비전 채널의 영업허가를 보유하기 위하여, 법인은 주식회사(“ <i>sociedad anónima</i> ”)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공중파 전국 텔레비전 방송 및 지방 영리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의 수는 법에 규정된 기준을 따르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영업허가를 보유한 모든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40 퍼센트로 제한된다.  <u>전국 텔레비전 방송</u>  공중파 전국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의 공급자(운영자 및/또는 프로그램 편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인)는 각 채널에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방송해야 한다.  가. 19:00시부터 22:30시까지 최소한 70퍼센트 나. 22:30시부터 24:00시까지 최소한 50퍼센트

다. 10:00시부터 19:00시까지 최소한 50퍼센트, 그리고  
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가호,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시간 동안 최소한 50퍼센트

#### 지역 및 지방 텔레비전 방송

지역 텔레비전 방송은 국가 소유 기관만이 공급할 수 있다.

지역 및 지방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공급자는 각  
채널에 최소한 50퍼센트를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분 야 유료 텔레비전 방송  
시청각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2001년 Ley 680, Arts. 4 및 11*  
*1995년 Ley 182, Art. 42*  
*1997년 Acuerdo 014, Arts. 14, 16 및 30*  
*1996년 Ley 335, Art. 8*  
*1998년 Acuerdo 032, Arts. 7 및 9*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유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법인은 승인 받은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콜롬비아의 공중파 전국, 지역 및 지방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가입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역 및 지방 채널의 전송은 유료 텔레비전 방송 운영자의 기술적 능력에 따를 것이다.

위성 유료 텔레비전 방송의 공급자는 기본 프로그램에 콜롬비아 정부의 공익 채널의 전송을 포함하는 의무만을 부담한다. 국내 콘텐츠 쿼터에 따라 공중파 프로그램을 재방송 하는 경우, 유료 텔레비전 방송 제공자는 원래 신호의 콘텐츠를 변경할 수 없다.

위성은 제외한 유료 텔레비전 방송

원래의 것과 다른 광고를 전송하는 유료 텔레비전 방송 영업허가 보유자는 이 부속서의 22페이지 및 23페이지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각 제작 서비스에 대한 유보 항목에 기술된, 공중파 전국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최소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가 콜롬비아의 영역 외부에서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경우, 콜롬비아는 *1997년 Acuerdo 014 제16조*를 유료 텔레비전 방송 공급자에게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최소 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콜롬비아는 제9.6조제1항다호(비합치조치)에 따라, 이 해석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이다.



구역, 읍 및 지구 단위의 현재 영업허가가 일단 만료되면 이러한 단위의 유료 텔레비전 방송 영업허가의 수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며, 2011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없을 것이다.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공급자는 콜롬비아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매일 18:00시부터 24:00시까지 최소한 한 시간 방송하여야 한다.

분 야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5년 Ley 182, Art. 37 numeral 4*  
*1999년 Acuerdo 006, Arts. 3 및 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재단, 협동조합, 협회 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서비스는 서비스 지역 및 채널의 수와 유형에 관하여 제한되고, 60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협회원 또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폐쇄 네트워크 지역 접근 채널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분 야	폐기물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조 치	<i>2000년 Decreto 2080, Art. 6</i>
유보내용	<p><u>투자</u></p> <p>외국인 투자는 콜롬비아에서 배출되지 아니한 유독성, 유해성, 또는 방사성 폐기물의 가공,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분 야	운송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i>1996년 Ley 336, Arts. 9 및 10</i> <i>1999년 Decreto 149, Art. 5</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영역 내에서의 대중 교통 서비스 공급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 어야 한다.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콜롬비아 내의 활동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둔 외국 기업만이 콜롬비아 영역 내에서 그리고 콜롬비아 영역으로부터의 복합 화물 운송을 공급할 수 있다.

분 야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8.10조) 내국민대우 (제9.2조)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i>2001년 Decreto 804, Arts. 2 및 4 inciso 4</i> <i>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 1455</i> <i>1984년 Decreto Ley 2324, Arts. 99, 101 및 124</i> <i>2001년 Ley 658, Art. 11</i> <i>1988년 Decreto 1597, Art. 23</i>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콜롬비아 국적 선박을 사용하는 기업만이 콜롬비아의 영역 내 두 지점 간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서비스(카보타지)를 공급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 국적 선박은 콜롬비아 내에 그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고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콜롬비아 영해에서의 해상 및 내륙수로 공공 도선 서비스는 콜롬비아 국민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콜롬비아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각 허가의 발급일로부터, 지속적으로 또는 단속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콜롬비아 국적 및 외국 국적 선박(어업 관련 선박은 제외한다)의 선장, 임원, 그리고 나머지 선원의 최소한 80퍼센트는 콜롬비아인이어야 한다.

분 야	항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1991년 Ley 1, Arts. 5.20 및 6</i> <i>1989년 Decreto 1423, Art. 38</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 보유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항만의 건설, 유지 및 관리를 기업의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sociedad anónima</i> )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국적 선박만이 콜롬비아 수역에서 항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콜롬비아 해양청( <i>Dirección General Marítima</i> )은 어떠한 콜롬비아 선박도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외국 국적 선박이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발급되는 허가는 6개월간 유효할 것이나,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분 야	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이행요건(제8.9조)
조 치	<i>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1795, 1803 및 1804</i>
유보내용	<u>투자</u>  콜롬비아 국민 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콜롬비아에서 상업적 항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항공기를 소유하고,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대리점 또는 지점으로 설립된 모든 항공 서비스 회사는 콜롬비아에서의 운영을 위해 콜롬비아 근로자를 9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고용한다.